

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(제3조제1항제5호의3 관련)

시설내용	시 설 기 준	
	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	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
계류시설	○ 계류로프: 로프 Ø 40mm 이상 ○ 닻(철재): 450 kg 이상 ○ 가두리시설의 부력: 평방미터당 100kg이상(완충부자 400ℓ)	○ 부유식 및 석축식 - 잔교(棧橋: 다리 모양의 구조물) - 부력: 평방미터당 300kg 이상 ○ 콘크리트식 - 양식장 및 낚시터 내부에 사다리를 갖출 것
안전시설 및 장비	○ 보행통로 1m 50cm ○ 난간보호대: 로프 Ø 40mm 이상 ○ 구명동의 - 최대동시이용가능인원의 100%에 해당하는 수. 다만, 20% 이상은 반드시 어린이용일 것 ○ 구명줄: 지름 10밀리미터 이상, 길이 30미터 이상) ○ 구명부환: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%에 해당하는 수	○ 보행통로 1m 50cm ○ 난간보호대: 로프 Ø 40mm 이상 ○ 구명줄: 지름 10밀리미터 이상, 길이 30미터이상 ○ 구명부환: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의 20%에 해당하는 수
편의시설	○ 화장실(오물이 해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방식) 1개 이상 ○ 차양(그늘막)시설 3 × 6m 1개 이상	○ 화장실(수세식) 1개 이상 * 반드시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을 것 ○ 차양(그늘막)시설 3×6m 1개 이상
기타시설	○ 안내간판 1개 ○ 어선 또는 선박 접안시설 1개소 ○ 구급약품, 피뢰침	○ 안내간판 1개 ○ 구급약품, 피뢰침